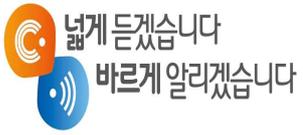


 <b>국토교통부</b> <small>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small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14. 1. 28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건설경제과	담당 자	·과장 문성요, 사무관 안남기, 주무관 박성열 ·☎ (044) 201-3504, 3514, 3515	
보 도 일 시	2014년 1월 2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8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건설분쟁,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.

### - 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」 국무회의 의결 -

- 앞으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.
  -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7일부터 발효되는 법률('13.8.6.공포)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. 동 법률에서는
  -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였다.
    -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어느 일방(신청인)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상대방(피신청인)은 조정에 응해야 하고,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.
    - 피신청인의 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 등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, 조정이 접수되면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조정신청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.
    -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하여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.

- 또한,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 중앙(국토부)과 지방(시·도)에 각각 설치되었는데, 조정 실적이 전혀 없었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하고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.

○ 이밖에도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하였다.

-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, 건설업체도 이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

○ 건설분쟁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받게 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0~500만 원으로 정했다.

\* 1회 300만 원, 2회 400만 원, 3회 500만 원(횟수는 1년간 누계)

○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‘이번 개정으로 건설분쟁 조정 체계를 정비하게 되어 증가하는 건설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,

\* (재판) 1~2년, 소송비용 발생 → (조정) 약 4개월, 별도 비용없음

○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(수급인)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’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안남기 사무관(☎ 044-201-35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